

전라남도 **도보**

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제2023-22호 2023년 4월 10일 (월)

www.jeonnam.go.kr

목 차

◆ 공 고

전라남도 공고 제2023-443호 입법 예고 공고

전라남도 공고 제2023-443호

입법 예고 공고

「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와 「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4. 10

전라남도지사

1. 자치법규명

○ 「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」

2. 개정이유

○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(2023.3.2.)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 필요
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 등을 일제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 예외조항 삭제(안 제4조제1호)

나.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삭제(안 제5조, 별표 1)

-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삭제

다.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삭제(안 제6조)

-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토록 삭제

4. 입법 예고기간 : 2023. 4. 10. ~ 2023. 4. 16.(7일간)

5. 「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안」: 다음

6. 의견제출

○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(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 서식

제정(안)	수정(안)	의견(사유)

- 의견 제출할 곳 : 전라남도청 회계과
 - 주 소 :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, 전라남도청 회계과
 - 연 락 처 : 전화(061-286-3661), 팩스(061-286-4760)
 - 전자우편 : 이메일(kdjetlife@korea.kr)
- 의견제출 방법 :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전자우편 등

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

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라남도 소속” 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” 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비지급” 을 “여비 지급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별표 1” 은” 을 “별표” 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” 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” 으로 본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세계로 준비하는
대도약!
전남 행복시대

생명의땅 으뜸 전남

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☎061-286-2073